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67482 판결 [건물명도 등]

재판경과

서울남부지방법원 2024. 4. 25 선고 2023나67482 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2125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C

변론종결 무변론

판결 선고 2024. 4. 25.

제1 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 5. 17. 선고 2022가단12125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로부터 2,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2022. 4. 11.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의 종국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의 불변기간 이내에 항소를 제기하여야 한다(민사소송법 제396조).

나. 기록에 의하면, 원고 승소의 제1심판결은 2023. 5. 17. 선고된 사실, 피고는 2023. 10. 13. 제1심 판결정본을 수령한 사실, 피고는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인 2023. 10. 31.에 이르러 비로소 제1심법원에 추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항소는 항소기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한편 항소장이 피항소인에게 송달된 후에는 항소장각하명령을 할 수 없고(대법원 1981. 11. 26.자 81마275 결정 등 참조), 민사소송법 제413조에 의하여 판결로써 항소를 각하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2023. 11. 17. 이 사건 항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2.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명재권, 판사 이민수, 판사 송승용

별지